

〈韓·日水資源會議 議題〉

河川에 關한 收入金과 使用에 對한 研究

辛 洪 三*

1. 河川에 關한 收入金의 性格

國家의 收入을 크게 分類하면 租稅收入, 行政收入, 官企業 및 官有財產收入과 公債收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河川에 關한 收入金(이하 “河川收入金”이라한다)은 政務遂行에 따라 附隨的으로 發生하는 行政收入이므로 同 行政收入의 性格을 考察하므로서 河川收入金의 性格을 알 수 있다.

行政收入은 租稅以外의 公課 또는 政務收入이라고도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任務遂行에 附隨하여 생기는 收入으로서 特別補償原理에 의한다는 점에서 租稅와 다르며 國家의 公權力を 뒷받침으로 한다는 점에서 官企業 및 官有財產收入과 다르다.

行政收入에는 國家의 特定活動에 의하여 特殊利益을 받는 者로부터 그 費用의 一部를 徵收하는 手數料, 國家의 営造物을 使用하여 特定個人의 얻는 利益에 대하여 特別補償金의 原則에 따라 課徵하는 使用料, 特定地域內에 사는 住民이 國家의 施設設置로 因하여 便益을 받았을 때 그 利益을 받는 者로부터 所要經費를 收益에 따라 分擔케 하는 收益者 負擔金 및 國家가 要求하는 行為 또는 不作爲의 義務에 위배하였을 때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그 대가로 徵收하는 違法金이 있으며, 河川收入金도 아래와 같은 種類로 나누어 살펴볼 때 滅川敷地의 賣却收入을 除外하고는 本 行政收入에 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河川收入金의 種類

(1) 河川占用料

河川은 公公用에 供하는 公公用財產으로 一般

에게 使用하도록 하고 맷가를 要求하지 않는 것 이 原則이며 公公用 또는 公物의 管理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一時的으로 特定人에게 使用하도록 許可하는 境遇에도 官有財產의 賃貸의 境遇와 같이 契約에 의하지 않고 使用許可로 하고 있으며 그 收入도 官有財產收入이 아니고 行政收入中 使用料로 하고 있다.

(2) 許可手數料

河川의 占用許可時 占用料等에 대한 一定率을 許可手數料로서 徵收하고 있으며 國家의 收入으로 되는 收入印紙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되는 收入證紙를 許可時에 添附하도록 하고 있다.

(3) 收益者負擔金

河川工事로 因하여 그 隣近土地의 價格上昇으로 현저한 利益이 發生하였을 때 當該 土地價格이 當初 土地價格에 自然上昇值의 2倍를 合한 金額을 超過하여 上昇한 金額中 1/2範圍內에서 賦課總額은 當該 河川工事費의 2/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賦課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滅川敷地의 賣却收入

本 收入은 性質上 行政收入이 아니고 官有財產賣却收入에 속하므로 私經濟的 立場에서 契約締結의 方法으로 賣却하며 滅川敷地의 發生後 特別한 事由가 없는한 1年以內에 土地評價士등의 鑑定評價額을 基準으로 處分하도록 하고 있다.

3. 河川占用料等(滅川敷地費却收入 除外) 決定基準

本 決定基準에는 利益補償主義과 費用補償主義의 2 가지 基準이 있다. 利益補償主義는 國家

* 建設部 水資源局 水政課長

로 부터 받는個別的利益에 비례하여 占用料等을 決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費用補償主義은 國家行為의 個別的 要求 또는 河川의 占用等으로 發生되는 費用을 基準으로 하여 國家에 補償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占用料등이 너무 과중하며 特定人이 利用할 수 없게 되므로 個人에게 주는 利益을 上限으로 하고 그 費用을 下限으로 하여 經濟·社會의 여리측면을 考慮하여 個別的利益이 큰 것은 높은 占用料를 賦課하고 公益性이 큰 것은 낮은 占用料를 賦課하도록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收益者負擔金은 收益을 發生케 한 施設의 設置費用을 決定하고 그 限度에서 利益을 받는 程度에 따라 分配하여야 한다.

다. 河川收入金의 徵收効果

河川은 公共用物로 一般公衆에 一般的으로 利用하도록하고 그 費用은 國民의 共同負擔(租稅)으로 하는 것이 原則이나 이러한 一般的的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내에서 特定한 個人에게 個別的으로 또 具體的으로 特定한 利益을 제공하고 대가를 徵收함으로서 다른 國民의 負擔을 줄이고 좁은 國土空間을 效率的으로 利用하는 것이 合目的의이고公正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河川收入金의 徵收 및 使用現況

河川의 管理를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는 大은 豫算이 所要하게 되며 그러한 豫算을 河川에서 나오는 河川收入金으로 可能한 範圍내에서

充當하여 一般國民의 負擔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河川收入金의 性格을 考慮하면서 河川收入金을 可能한한 많이 받아들이고 效率的으로 使用하는 것이 중요하다.

現在 우리나라의 河川收入金의 徵收 및 使用實績에 대하여 問題點을 分析하고 앞으로의 改善方向에 대하여 언급하여 보고자 한다.

가. 河川收入金의 徵收 및 使用實績

(1) 河川收入金에 관한 制度

우리나라는 河川을 直轄, 地方 및 準用河川 3種類로 나누어 管理하고 있으며 그 중 直轄河川은 建設部長官이 管理하고 있으나 그 維持管理에 대하여는 各市·道知事が 擔當하고 있으므로 直轄河川에서 發生하는 收入金도 各市·道知事が 徵收하여 使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建設部長官이 管理하는 直轄河川의 改修工事費等 維持管理以外의 費用은 國庫(租稅收入金)에서 充當하고 있다. 그리고 河川收入金은 河川法 第65條의 規定에서 河川의 管理費用以外에는 使用할 수 없도록 費途制限規定을 두어 河川管理를 效率的으로 하게 하고 있다.

(2) 徵收 및 使用實績

各市·道知事が 1982~1986年 사이에 河川收入金을 徵收하고 또 河川에 投資한 實績과 建設部長官이 河川에 投資한 實績은 아래와 같다.

나. 實績分析

위와 같이 河川收入金의 徵收實績은 建設部長

市·道知事의 河川收入金徵收 및 投資實績

單位: 百萬元

河川 分類 別	河川收入金 徵收 實績										用途別 投行 實績									
	年別					年 別 (%)	年別					年 別 (%)	年別					年 別 (%)		
	'82	'83	'84	'85	'86		'82	'83	'84	'85	'86		'82	'83	'84	'85	'86			
1. 河川 使用 料	31,451	30,251	32,222	34,675	32,444	163,144	70,629 (10%)	計	44,716	56,637	64,036	77,909 (57.4%)	57,445	303,985	6,777 (18%)					
2. 河川 土地 占用	467	436	402	438	488	2,281	456 (2)	河川地 租	36,126	40,430	42,844	66,002 (20.7%)	30,371	215,773	43,154 (21%)					
3. 土地 占用	6,417	7,008	6,666	7,753	8,036	36,482	7,256 (22)	河川地 租	165	860	1,362	971	610	3,968	754 (1)					
4. 青村 採取	22,519	16,720	18,200	21,212	18,238	96,885	19,379 (55)	河川地 租	3,695	11,654	8,431	3,734	15,787	43,321	8,666 (14%)					
5. 河川 敷地 施設	1,850	3,217	3,395	2,746	2,936	14,234	2,822 (6)	河川地 租	1,785	3,634	4,997	3,028	3,794	17,238	3,448 (6%)					
6. 其他	2,198	1,570	3,659	2,470	2,087	13,284	2,627 (6)	其 他	2,935	3,059	6,494	4,294	6,883	23,606	4,721 (6%)					

建設部長官의 投資實績

單位：百萬 원

區 分	年度別	'82	'83	'84	'85	'86	計	平 均
	計	54,921	70,221	113,502	85,296	79,498	403,438	80,688
河 川 改 修 事 業	46,893	70,221	82,230	78,811	74,845	353,000		70,600
水 害 復 舊 事 業	8,028	—	31,272	6,485	4,653	50,438		10,088

官이 投資한 工事費等을 除外한 投資費의 54% 全體 投資費에 대하여는 23%에 끗미치는 實情 으로 河川收入金으로는 河川管理費用을 充當할 수 없다는 結論이 된다.

그러므로 河川의 管理를 위하여는 一般收入인 租稅收入에서 充當하여야 하는 것은 不可避하며 또한 河川收金을 地方自治團體에서 徵收하므로 써 地方自治團體別로 收入과 費用所要의 편재에 따른 不均衡의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다. 河川收入金의 徵收展望

河川收入金의 59%를 占하고 있는 河川骨材는 점차 고갈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며 河川의 主要 財貨인 流水占用料는 全體 물消費量의 50%를 使用하는 農業用水(118億m³)와 18%를 使用하는 生活用水(43億m³)에 대하여는 公益性으로 因하여 免除되고 있으며 9%를 使用하는 工業用水(21億m³)에 대하여도 낮은 占用料를 徵收하고 있으나 同流水占用料를 有料로 하고 料金도 현저히 인상하지 않는다면 河川收入金은 점차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3. 漢江綜合開發事業의 施行

한편 특기할만한 것은 河川收入金을 利用하여 서울市區域內 漢江의 綜合開發事業을 아래와 같이 施行할 것이며 여타 大都市 地域도 同事業의 成果에 따라 河川綜合開發事業計劃을樹立 施行하려고 하고 있다.

○ 投資財源

一 河川骨材賣却代 1,962億원(河川收入金 實績에서 除外)

一 서울市費 確保 2,172 ₩

 計 4,133 ₩

○ 工事期間 : 1982. 9. 28~1986. 9. 10(4年間)

○ 工事量

— 低水路整備事業 36km(河幅 : 725m~1,175 m, 基準 水深 : 2.5m) 河川骨材 6,282萬m³ 採取, 護岸工事 竝行

— 高水敷地造成 : 693萬m² 造成

 近接施設 77個所, 市民公園 9個所, 遊園地, 駐車場等 設置

— 올림픽大路建設 : 擴張 26km, 新設 10km, 橋梁 3,170m 建設, 입체교차로 新設 6個所, 개량 5個所等

— 分類下水管路設置 : 54.6km 建設

4. 河川收入金의 增大方案

가. 河川의 重要財貨는 물이므로 流水占用料를 有料로 하고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물의 낭비 및 節約을 誘導하며 河川收入金의 增大를 爾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河川을 管理하는 專擔機關을 設置하여 河川制度의 改善으로 河川收入金의 增大와 費用의 不均衡을 없애고 수입원을 開發하는 등 河川收入金의 增大方案을 研究하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結 言

가. 河川收入金의 性格上 河川收入金의 현저한 增大는 不可能하므로 점차적으로 增大方案을 講究하여야 하며 不足分은 租稅收入으로 充當하여야 할 것이다.

나. 重要都市 内河川骨材採取料收入으로 漢江綜合開發事業과 같이 大都市地域內 河川을 綜合的으로 整備하여 市民의 休息空間을 確保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河川管理專擔機關을 設置하여 河川收入金의 增大方案을 講究하고 河川管理의 效率化를 期한다.